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126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9.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2.08.29

[Email mikmik7003@naver.com]



# 정보공개서

화레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화레무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5번길 13, 113호 (송도동, 아크리아)

[대표전화번호] 032-214-9295

[대표팩스번호] 032-434-1454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32-214-9295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7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12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2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5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7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4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42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화레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5번길 13, 113호 (송도동, 아크리아)					
화레무	법인 설립	법인 설립등기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개인사업자		2015.11.02	김종욱	032-	214-9295	032-434-1454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65-	-19-00129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화레무라 합니다)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화레무	화레무의 뜻 : 화 "火", 레 레스토랑(Restaurant) 약자와 다녀가신 손님들이 더할 수 없는 큰복을 드리고자 무상대복 無上大福을 녹여낸 상호 )
상 호	화레무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화레무	출원 : 제 40-2016-0081385 호 등록 : 제 40-1242421-0000 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년	42,461	63	42,397	677,190	35,706	40,555
2021년	74,938	0	74,938	679,841	28,638	32,540
2022년	59,934	0	59,934	136,633	-15,707	-15,00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이금	연 역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종욱	대표이사	2015.11 ~ 현재	화레무 대표	가맹사업 총괄 관리
관련 임원	10	네포이시	2015.11 ~ 원제	최네구 네표	기 6시 B 등 글 현덕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ન	임원-	수(명)	제이스(면)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2년 12월 31일	1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화레무]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화레무</b> (상표권)	상표 서비스표	2016.10.07. 출원 2017.03.28. 등록	출원 4020160081385 등록 4012424210000	김종욱	2027.03.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화레무] 가맹사업 현황

1. (화레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7년 10월 2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5년 11월 02일)

## 2. (화레무)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화레무	화레무	김종욱	2017.10.27.부터 ~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5번길 13, 113호 (송도동, 아크리아)

# 3. (화레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화레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와데ㅜ	기타외식	고급양갈비,양등심,양갈비살,양꼬치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화레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0]	2	2020.12.3	1.	2021.12.31.			2022.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8	1	12	11	1	16	16	-
서울	-	-	-	-	-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5	4	1	6	5	1	7	7	-
광주	ı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2	2	-	3	3	-	3	3	-
경기	2	2	-	3	3	-	5	5	-
강원	1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_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_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화레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0	4	4	_	-	_	8
2021	8	4	-	1	1	11
2022	11	5	_	-	1	16

# 6. [화레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화레무] 외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화레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2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6	287,165	13,356	484,092	23,537	145,834	7,684	15곳 산정
서울	1	-	-	-	-	-	-	5곳 미만
부산	_	_	_	-	_	-	-	
대구	_	_	_	_	_	_	_	

인천	7	297,590	13,226	423,682	23,537	145,834	7,684	7곳 산정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3	-	-	-	-	-	-	5곳 미만
경기	5	-	ı	-	-	-	-	5곳 미만 산정
강원	ı	-	ı	-	-	-	ı	
충북	ı	-	ı	-	-	-	ı	
충남	-	-	-	_	-	-	-	
전북	-	_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위 표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당사 15개 가 맹점의 추정 매출액(당사 물류 공급액 \* 4)입니다.

# 8. [화레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화레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2	16	764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형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송도지점	인천시 연수구 신승로 122 송도프라자	032-851-0436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 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www.kbst.com에 접속하여 상단의 '뱅킹-기업뱅킹-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도'에 접속하여 가맹금 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화레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맹비	5,500	가맹 계약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입비(가맹점 운영권한 부여) -점포 실사, 가맹점 오픈 시 인력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개점 전 교육비	2,200	동시	반환될 수 있음	교육 개시 이후	-개점 전 조리/서비스/운영 (인원 추가시 추가 비용 발생)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 계약과 동시	로열티,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	-------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9,700
가입비	5,500
교육비	2,200
(현금)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급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6,780]	3,339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지정업체)	33,000 (철거, 전기승압, 덕트, 가스시설, 화장실, 소방, 냉난방 등 별도)	1,650	계약시 40% 중도금 40%	공사 전 계약 취소	매장크기 66㎡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 부담
필수주방설비	(지정업체)	11,000		집기도착 시 20%	설치 전 계약 취소	
주방 및 홀 집기류	시장에서 자체 조달	7,700			설치 전 계약 취소	
착화기	(지정업체)	3,08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 취소	
전면간판 및 실내 싸인물	(지정업체)	5,500		설치 7일 이전	설치 3일전	
가구류	시장에서 자체 조달	3,850		설치 7일전	설치 3일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화레무 및 직접구매	1,650		설치 3일전	상품 미공급시	

POS 시스템 점주 직접 비교	설치
견적후 구매 1,000	14일전 설치 3일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 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지급시기는 계약일로부터 7일후입니다.
- \*\* 별도 비용 : 전기증설, 가스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샷시 ,편의시설, 화장실공사,콜벨, 음향기기, 제빙기, PDP, 닥트, 생수기, 냉난방기,테라스,어닝,주방 온수기,중문시설 등을 별도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귀하는 검수비로 매장크기 3.3㎡ 기준 일금 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가맹본부와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 희망자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차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5,500	총액의 20%	총액의 20%	총액의 20%	총액의 40%
납부일	계약일로부터 ~ 60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30일	계약일+60일
비고		1,100	1,100	1,100	2,200

※ 가맹비 예치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3쪽]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 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ole   -lellu u	거니게 된 된	월 카드 매출액(VAT 포함) 2천만원이하 로열티 없음	다음 월	후불로 반환		
로열티	가맹본부	월 카드 매출액(VAT 포함) 2천만원이상 x 1.1%	5일	없음	-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다음 월 20일	미 시행시 반환	시행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2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인테리어 시설,각종기기 의교체, 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b>VII.</b> 1.점포환경 개선시 비용 참조
환경 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b>Ⅷ.</b> 1.점포환경 개선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지정업체 (미정)	미정	다음 월 5일		지정업체와 사업자 별도 계약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가맹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가맹본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화레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2개월 전에 승인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수 가입비일금 5,500,000원(부가세포함) 교육비일금 2,200,000원(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일금 2.000,000(부가세없음) 등을 부담하여햐 합니다.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계약서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 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 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 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화레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형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급양갈비			
양갈비살			
양등심			
모듬구이			
양꼬치		1회 위반: 구두 경고	
간장새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오뎅탕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김치나베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간장새우			
간장새우밥			
타고와사비			
음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2의 위반: Z의 이상 서년 시상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고급양갈비	15,000(120~140g)	월별 우편 전달	2022.6월 기준
양갈비살	14,000(100g)	"	"
양등심	15,000(100g)	"	"
모듬구이	56,000(480g)	"	"
간장새우	16,000	"	"
김치나베	17,000	"	"
오뎅탕	15,000	"	"
타고와사비	12,000	"	"
간장새우밥	7,000	"	"
음료수	2,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접종 임귀 L	가맹본부	계열회사	
양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 사업	화레무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인도)로 500m을 원칙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다만, 일반 주거지역 외 지역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에 따라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 도심의 복합(대형)상권 및 중심 상권
- 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백화점·할인마트·공항·호텔·지하상가·놀이동산 등의 특수상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 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화레무'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화레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2	100%	_	_	_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2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화레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 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화레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 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0조 1항
○ 가맹본부의 약정한 물품의 공급.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 나 이를 지체한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 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0조 1항
○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 및 원자재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 우	30조 1항
○ 가맹본부가 정한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에 당사와 동종의 영업을 한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 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0조 1항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 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0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8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8조 2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li> <li>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li> <li>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li> </ul>	38조 2항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 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 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 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8조 2항

- \* 위 표는 2020년 4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일괄 수정한 것으로, 가맹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ㅁ이ㆍ커메비비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화레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양갈비, 양등심 등 당사와 유사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화레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7:00 ~ 01:00	월25일 이상 영업(매장상황에 따라 휴무일 조정)	문의: 가맹본부 (032-214-92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sup>®</sup>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sup>©</sup>	н] <u>고</u> ®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가맹본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화레무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 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화레무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8	라고 서거	부담비율		비다 저워	비고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912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전체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n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2019년의	따라 유동적   경우 행사별로 20~50만원 부담)	n	"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 시 → (가맹본부)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늘의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자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770만원 단,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해지된 경우는 위약금과 별도로 투입된 점포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u>남은 계약일 \* 삼만원정(₩30,000)</u>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2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 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0 ~ 27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14일후)	D-26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기간에 가맹금 예치	D-26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 ~ 23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2 ~ 3(20일)	
교육 실시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16 ~ 3(14일)	
설비 및 집기	- 주방 및 홀 설비 - 주방기기,집기비품,원·부자재 입고	D-10 ~ 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맹본부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고, 민사소송 외에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내용도 포함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으로 인하여 기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 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 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 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032-214-929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032-214-9295)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W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화레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현장 교육	개점 인력 파견 가맹점주 운영 지원 고객서비스 훈련 전 메뉴 조리 교육	실습교육	가맹점 개점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개점 전 교육에 대한 보수 교육	실습교육	수시	
특별 교육	신메뉴 출시.고객 서비스 등	실습교육	수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화레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 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가 (032-214-9295)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